



해양분야 포괄적 협력을 위한 협약서



인천항만공사(이하 “갑”이라 약칭함)와 (재)한국해양재단(이하 “을”이라 약칭함)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해양분야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해양분야 전반에 걸친 업무 수행에 있어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활동) 양 기관은 해양관련 업무수행의 공동협력을 위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.

1. 해양 관련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
2. 해양 관련 인프라 및 전문 인력 교류 활성화
3.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과 대국민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홍보
4. 기타 양 기관이 합의에 의해 결정한 사항

제3조(기부금) 갑은 을에게 민간주도의 해양 문화 및 교육사업 등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매년 절감된 예산중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.

제4조(이행) ①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 등은 양 기관의 제 규정에 따르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5조(기부시 혜택) 을은 갑에게 다음 각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.

1. 기부시 법인세법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
2. 재단소유(사진, 문학) 저작권 일부사용 가능
3. 재단 행사 참가우선권 보장
4. 각종 재단 주최 해양이벤트 행사시 임직원 초청
5. 재단 빌간물 광고 홍보 및 정기발송

제6조(기밀유지) 양 기관은 상호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협약의 효력)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2년간 유지된다.

②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이 협약 종결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,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5월 일

남봉현

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
인천항만공사
사장 남봉현

이재완

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
(재)한국해양재단
이사장 이재완